

[협력회사 제3자 검증 주요 항목별 준수율¹⁾]

		2023년		2024년		2025년 (DX부문)		2025년 (DS부문)
		1차 협력회사	2차 협력회사	1차 협력회사	2차 협력회사	1차 협력회사	2차 협력회사	1차 협력회사
[노동인권]								
자발적 근로 ²⁾	%	99	100	98	96	98	93	100
이동의 자유 보장	%	99	100	98	100			
아동공 고용금지	%	100	100	100	100	100	100	100
미성년 근로자 보호	%	99	100	100	97	100	100	100
근로시간 관리	%	85	78	93	93	92	83	100
주1회 휴무 보장	%	96	95	98	97	98	94	96
임금·복지후생 ³⁾	%	95	92	93	86	91	89	99
차별금지 ⁴⁾	%	99	100	99	99	91	91	100
인도적 대우	%	100	100	100	92			
결사의 자유 ⁵⁾	%	99	100	99	99	99	97	97
경영시스템	%	-	-	-	-	94	74	97
[보건안전]								
산업안전 ⁶⁾	%	96	100	98	92	94	86	97
비상사태 대비	%	98	96	95	87	94	82	98
산업재해와 질병 ⁷⁾	%	99	100	99	100	97	88	99
육체적 과중업무	%	99	100	99	94	98	97	100
위험장비 안전 관리	%	96	100	99	98	97	100	100
위생, 식품, 주거	%	99	100	98	94	98	91	98
경영시스템	%	-	-	-	-	97	91	100

		2023년		2024년		2025년 (DX부문)		2025년 (DS부문)
		1차 협력회사	2차 협력회사	1차 협력회사	2차 협력회사	1차 협력회사	2차 협력회사	1차 협력회사
[환경]								
오염방지	%	98	100	99	88	-	-	-
취급주의 물질 관리	%	98	100	97	98	-	-	-
환경 인허가	%	-	-	-	-	97	100	100
수자원 관리	%	-	-	-	-	100	100	100
폐수·고형폐기물 관리	%	99	100	98	95	99	92	100
대기오염	%	99	94	99	98	99	100	100
에너지 소비, 온실가스 배출	%	-	-	-	-	98	92	96
경영시스템	%	-	-	-	-	99	87	100
[윤리]								
공정거래·광고·경쟁	%	-	-	-	-	100	92	100
기업윤리	%	98	100	98	97	-	-	-
부당이익 금지	%	100	100	99	91	100	97	100
정보공개	%	100	100	100	100	100	100	100
지적재산	%	100	100	100	85	100	97	100
신원보호 및 보복금지	%	100	100	99	97	100	90	100
개인정보보호	%	100	100	100	100	100	100	100
경영시스템	%	-	-	-	-	98	79	99
[공급망 관리]								
준수인지	%	100	100	98	94	99	97	100
물질규제	%	100	100	100	100	100	100	100
분쟁지역광물 사용 금지	%	-	-	-	-	100	100	100
협력사 책임	%	-	-	-	-	93	61	90

1) 연도별 제3자 검증을 거쳐 개선 결과를 반영한 수치(DX부문: 1차사 99개, 2차사 33개 / DS부문: 1차사 23개), 2025년 검증 항목 변경으로 일부 항목 삭제, 통합, 신규 추가됨

2) 자발적 근로(노동인권): 강제노동 금지 정책 수립, 근로 계약서 체결, 이동의 자유 보장, 신분증 원본 보관 금지 등

3) 임금·복지후생(노동인권): 정확한 임금 산정과 지급, 급여명세서 제공과 임금 체불 금지, 부당한 벌금제 금지, 사회보험료 원천징수액 납부 등

4) 차별금지(노동인권): 성별 등 개인특성에 따른 차별 금지(급여, 기회 제공 등), 차별금지 정책과 절차 수립, 종교행사 장소 제공 등

5) 결사의 자유(노동인권): 노조 설립과 가입의 자유 보장, 단체교섭 권리 보장, 평화적 집회 권리 보장, 조합원 차별금지 등

6) 산업안전(보건안전): 산업안전보건 인허가, 안전한 작업장 설계 및 통제, 모성보호 등

7) 산업재해와 질병(보건안전): 산업재해 및 질병 원인분석/시정조치/기록관리, 응급처치 장비와 구급함 이용, 유해공정 작업자 관리 등